

# 「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‘보류’ 결정 설명자료

2023년 10월 20일,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이 발의한 「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‘보류’ 결정 된 것에 대한 설명 자료임

-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이 발의한 「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주요 내용은,
 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 개정에 따라, 통·반장의 위촉 및 해촉,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통·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(안 제5조, 제7조 및 제8조)하는 것과 통장 해임 시 통장 실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임
- 본 조례안은 우리 서구 관내 23개동 수백 명의 통반장님의 임기와 활동, 수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,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 시,
  - 내용이 방대하고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, 서구청이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,
  - 서구청이 개정안에 대해 23개동 통·반장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수렴조사를 했음에도 조사결과를 비공개한 점 등의 이유로,
  - 내용의 찬반여부를 떠나, 서구청이 23개동 통·반장의 의견이 수렴된 조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투명하게 공개한 후, 이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, 이번 회기에서는 ‘보류’ 하고,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결정했음.

##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